

인천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가합50112, 2022가합50129(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및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원고보조참가인 1. A단체

2.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피 고 1. 주식회사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는 174,736,699원, 피고 E는 89,751,9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2. 10.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는 174,736,699원, 피고 E는 89,751,9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2.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 A단체와 B의 채권 관계

1) 원고보조참가인 A단체(이하 'A단체'라 한다)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 B)에게 2019. 7. 9. 10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는 이에 대하여 12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A단체는 F과 2019. 7. 8.부터 2020. 7. 7.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할 대출금의 한도를 300,000,000원, 연체이자를 연 12%로 하는 공제금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B는 이에 대하여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A단체는 F에게 2020. 2. 3. 81,000,000원을, 2020. 4. 8. 9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2) A단체는 F이 2020. 2. 3.자 및 2020. 4. 8.자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교부한 약속어음이 어음 발행자의 당좌거래정지로 인해 지급이 거절되자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F 및 B에게 위 각 대출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59418), 위 법원은 2021. 3. 26. 'F 및 B는 연대하여 A단체에게 ① 8,523,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다만, 피고 B는 129,600,000원 한도 내에서), ② 174,500,000원 및 그 중 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6.부터, 93,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다만, 피고 B는 360,000,000원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과 B의 채권관계

1) B는 G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으면서 2011. 12. 2.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과 보증원금 12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1. 12. 2.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최종적으로 보증원금이 94,4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20. 11. 2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2) B는 신용보증기금과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25%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고, ②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지급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B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2011. 12. 6. 위 보증을 담보로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20. 5. 4. 소외 은행에 대한 예금부족에 따른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은행에 대하여 2020. 10. 30. 소외 B가 연체한 위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95,646,182원(= 원금 94,400,000원 + 이자 1,246,182원)을 변제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환급금 등으로 92,330원을 위 보증으로 인한 대위 변제 구상금에 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순차 양도

1) B는 2020. 4. 10.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을 341,673,75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는 2020. 4. 16.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1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18/42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210,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는 2020. 4. 17.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35/422 지분을 58,32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이 사건 소 제기, B의 파산 및 원고 파산관재인인 선임 등1) A단체는 2021. 4. 28., 신용보증기금은 2021. 10. 27. 이 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다.

2) B는 2020. 10. 5.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하단2979).

인천지방법원은 2021. 5. 21. B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같은 날 A단체 및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이하 '원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을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3) 원고 파산관재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8. 2. 신용보증기금을, 2021. 8. 9. A단체를 수계하는 것을 허가받고,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한편 A단체는 2021. 9. 6., 신용보증기금은 2021. 8. 25. 이 사건 소에 보조참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0112 사건의 갑 1 내지 12호증,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0129 사건의 갑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파산관재인인 주장 요지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및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할 무렵 이미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거나 늦어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4호가 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정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이에 원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하여 위 채무자회생법 조항에 따른 부인권을 행사한다.

한편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35,511,349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파산관재인인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 파산관재인은 가액배상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500,000,000원에서 위 235,511,349원을 공제한 264,488,651원을 안분하여 피고 D에 대하여 174,736,699원, 피고 E에 대하여 89,751,9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부인대상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92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A단체의 B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이나, 신용보증기금의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A단체와 F 사이의 대출약정 및 B와의 보증약정이 각 체결되고, 신용보증기금과 B의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불과 1개월이 지난 무렵인 2020. 5.경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및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 및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0. 5. 14.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이, 2020. 10. 30.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 및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0. 5. 7.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B가 2020. 10. 5. 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당시

신고한 파산채권액이 3,016,280,626원에 달하고, 2021. 8. 23. 파산채권액을 3,232,332,434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B가 이와 같이 채무초과에 빠진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한 채권자들인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로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들과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거래조건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는 B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B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일반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소송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이어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하여, 부인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므로, 부인권 행사로 인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는 부인권 행사시로 봄이 타당하여, 부인권 행사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인 대상 법률행위 당시 존재하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은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되어야 하고, 한편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43999 판결 등 참조).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피담보채무 235,511,349원이 변제됨으로써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2021. 12.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500,000,000원(피고 D가 매수한 부동산의 가액 330,329,295원 + 피고 E가 매수한

부동산의 가액 169,670,70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파산관재인이 2021.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부인권을 행사한 사실, 같은 날 위 서면이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는 2021. 12. 9.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500,000,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35,511,349원을 공제한 264,488,651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174,736,699원[= 330,329,295원 - 155,592,596원(= 235,511,349원 × 330,329,295원/500,000,000원),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피고 E는 89,751,952원[= 169,670,705원 - 79,918,753원(= 235,511,349원 × 169,670,705원/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기, 판사 김현준, 판사 김혜민

